이 자료는 10월 11일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회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2018. 10. 11.

금융위원회

제364회 국회(정기회) 업 무 현 황

2018. 10. 11

금융위원회

목 차

Ⅰ. 2018년도 예산집행사항 ····· 1

Ⅱ.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5

Ⅲ.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

Ⅳ.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99

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7

Ⅵ. 기타 사항 ····· 121

Ⅰ. 2018년도 예산집행사항

□ 2018년 예산집행현황('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액*	지출액
1. 인건비	**23,753**	**14,993**
2. 기본경비	**7,059**	**4,690**
3. 사업경비	**316,145**	**299,440**
· 서민금융지원 홍보	500	500
· 자금세탁방지추진	538	416
·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2,256	2,256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6,488	3,409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229	926
·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1,000	165
· 금융의 날 행사	77	5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41,467	31,000
· 금융소비자보호	180	71
·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170,000	170,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90,000	90,000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253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9	26
· 정책연구개발	554	68
· 금융정책알리기	336	158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216	15
· 국제중재수행	681	173
4.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2,100,000**	**1,399,400**
·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	2,100,000	1,399,400
합 계	**2,446,957**	**1,718,523**

* 전년도 이월(5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임

Ⅱ.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목 차

1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

1. 금융당국 혁신 ····· 9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10
3. 금융그룹 통합감독 ····· 11

2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1.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 12
2. 창업·혁신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14

3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1. 정책서민금융 강화 ····· 15
2. 국민들의 금융이용부담 경감 ····· 16
3.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 ····· 17

4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 금융편익 제고

1.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금융권 경쟁촉진 ····· 18
2. 핀테크 등 금융혁신 활성화 ····· 19
3.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 20

1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

1 금융당국 혁신

과제개요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추진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18.1월)하여 충실히 관리·이행

□ **금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 마련

그간의 성과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에 따라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정상추진 중**

※ **금융당국 혁신 관련 주요 추진사항 (예시)**

□ **(의사결정과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위설치법 개정 등으로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공개범위 확대, 법령 개정시 의견제출 반영여부 공개 등

□ **(검사·제재관행 개선)** '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검사항 발표(금감원), 검사 및 제재 시행세칙 개정·시행('18.4월)

□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공공기관 등 부정합격자·채용비리 연루자 직권면직 규정 신설, 금감원 최종면접시 외부위원 비중 50% 설정 등

□ **(진입규제 개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18.5월) 등

□ **(외부인 접촉관리 강화)** 금융위 및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정·시행 ('18.5월)

향후 추진계획

□ **금융당국 혁신**을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후속조치 지속**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배경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 ·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 CEO 선출절차 투명성 부족, 사외이사의 견제기능 불충분 등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그간의 성과

□ **'18.3월 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국무회의(9.11일)** 통과 이후 **국회에 제출(9.14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내용**

□ **(CEO 선출절차 개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 위주** (현행 과반수→2/3 이상)로 강화

○ CEO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을 금지**

□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 사외이사 추천시 CEO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원칙 명시

□ **(임원보수공시제 도입)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 공시

□ **(감사위원 업무전념성 제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보장**(2년)하고 **임원후보추천委, 보수委를 제외**한 **이사회內 다른 위원회 겸직 금지**

□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심사요건으로 기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경가법 위반**(금고형 이상) 추가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선제적 마련

3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개요

□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도입을 추진

○ 감독체계·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내부거래 관리 등 **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

* 감독대상(안)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 그룹은 제외)

○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등 금융그룹 고유의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그간의 성과

□ 추진방향 등을 담은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 (1.31일)

□ 도입방안을 구체화한 **모범규준 마련** (초안 4.2일, 확정 6.27일)

※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❶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그룹 內 구축해야 할 **리스크관리 조직·절차**

❷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이 준수해야할 **자본건전성 기준**(예: 자기자본 비율)

❸ 금융그룹 감독: 금융당국이 정비해야할 **금융그룹감독 조직·방식** 규정

□ **7월**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향후 추진계획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

* 박선숙 의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대표발의('18.6.29)

2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1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과제개요

□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자금의 **적시공급**,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재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조정 활성화 등 **기업 구조조정 체계개선**을 통해 **혁신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지원

그간의 성과

<기업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기업週期(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

*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착수('18.8월), IBK 창공 개소('17.11월)·운영

* (크라우드 펀딩) 95개 기업('18上), (정책금융) 보증 11.8조원, 대출 15.7조원('18.1~7월)

○ **(성장) 투자중심의 모험자본** 조성*·운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IR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지원

* (성장지원펀드) 3년간 8조원 규모 조성('18년 3.07조원 규모 펀드조성 진행 중)

** (산은 넥스트라운드) '16.8월~'18.8월, 118개 기업의 5,484억원 투자유치 지원

○ **(회수)**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선, 회수지원펀드**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및 회수시장 자금순환 활성화** 지원

* 이익요건 폐지 등 상장규제 완화, M&A·세컨더리 펀드 조성('17년, 1.4조원)

○ (재도전) 실패경험이 **재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재기지원 자금공급** 확대*

* 신·기보 보증을 통한 재창업 대출실적(억원) : ('17上) 131 → ('18上) 189

<기업구조조정 체계 개선>

□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

* 은행권·자산관리공사·성장금융이 0.5조원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으로 1조원 조성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1조원 투입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 수준으로 추정

○ 8개 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성장금융 등 **기업구조혁신펀드**의 母펀드 **출자기관***간 MOU **체결**후 **子펀드 조성**작업 중

*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은행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지원)** 제도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면밀하게 관리**

○ 정책수요자 및 지역별 **금융현장 방문**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금융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 현장소통 강화

□ **(구조조정 체계개선) 기업구조혁신 펀드**의 경우 子펀드의 **운용사 선정 및 민간 투자자 모집** 등을 거쳐 **금년중 투자 개시**

○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경험축적 및 시장규모**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조성 여부 검토

2 창업·혁신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기술금융/동산담보)

과제개요

□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를 위해 ①**기술금융** 및 ②**동산 담보 활성화 추진**

① 여신심사에 **기업의 기술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TCB社), 기술정보DB(TDB) 등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② 동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회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금융 등을 통한 **활용유인 부여**

그간의 성과

□ **(기술금융) 대출잔액**이 매년 약 30조원 증가하여 현재 전체 **中企대출대비 비중은 20%를 상회**(22.3%, 7월잔액, 151.5조원)

* 대출잔액(조원) : ('14)8.9 → ('15)60.6 → ('16)92.9 → ('17)127.7 → ('18.7월)151.5

○ 기존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금리 0.2%p 인하, 한도 2.3억원 확대** 등 **실질적 금융편의**를 제공 중

□ **(동산담보)** 5.21일 제도개선 발표 이후, 은행권은 **동산담보 내규 개정을 완료**(8.27일)하고 9월부터 **신상품 출시**

※ **은행권 도입현황(9.10일 기준)**

▶ **신상품 출시(4):** 신한, 하나, 우리, 기업

▶ **기존 상품 개선(6) :** KB, 농협, 씨티, 수협, 대구, 전북, 경남

▶ 신한, 하나, 우리, 기업, KB는 IoT 관리 도입 / 대구, 경남은 준비 중

○ **'18.8월말 잔액**은 **2,210억원 : '18.6월 대비 150억원* 증가**

* 대출잔액(억원) : ('18.1Q) 2,066 → (18.2Q) 2,063 → (18.8월) 2,210

향후 추진계획

□ **전문인력 확대** 등 **은행권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

□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 담보물 사후관리 기준 정비('18.下,) 동산담보법(법무부) 개정(개정안 마련, '18.下)

3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 · 소비자 보호강화

1 정책서민금융 강화

과제개요

□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조속한 경제적 자활**을 지원

그간의 성과

□ '17년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17.7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월) 등 다양한 연체자 지원제도를 마련·시행중

* 금융권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소각
* '18.8월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감면·추심중단 혜택 제공

□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년중 **총 6.9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18.1~7월중 4.1조원)

* (햇살론) 3.3조, (새희망홀씨) 3.0조, (바꿔드림론) 0.1조, (미소금융) 0.5조

□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17년중 **총 8.9만명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18.1~8월중 6.1만명)

향후 추진계획

□ '서민금융지원체계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발표** 예정

○ **정책 서민자금 지원,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 마련 →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 확정**

2 국민들의 금융이용부담 경감(최고금리,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과제개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단계적으로 20%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추진

그간의 성과

< 최고금리 인하 >

□ **대부업법 시행령**(금융위)과 **이자제한법 시행령**(법무부)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18.2.8일)

□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부처「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18.1월)

* ①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제단속 ②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안전망 대출 출시

< 카드수수료 인하 >

□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17.7월말), **밴수수료 체계개편** ('18.7월말),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2.5%→2.3%, '18.7월말) 추진

* 연매출 규모 2억원 이하(0.8%), 2~3억원(1.3%) → 3억원 이하(0.8%), 3~5억원(1.3%)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19.1월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최고금리 인하)**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관계부처·이해관계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18.11월)

3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

과제개요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 적극 추진 →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지속 조성

그간의 성과

□ 현장의 **생생한 의견반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친화적 변화를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관행·제도 개선**

* '18년중 103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981명 면담 및 334건 건의과제 발굴(~8월말)

※ **소비자 친화적 관행·제도개선 사례**

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②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천펀드 선정·배제시 기준사유 공시 의무화('18.10월)
③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추진('18.9월~)
④ 모바일·병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18.7월~)
⑤ 고객이 쉽게 핵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홈쇼핑 보험광고 개선 추진('18.9월 발표)

□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

※ **금융소외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사례**

①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18.4월~)
② 장애인 CD/ATM 확대 추진('18.3월말 현재 장애인 CD/ATM 수는 전체 대비 93.1% 수준)
③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④ 고령자 신용카드 가입시 큰글씨 서식 및 느린말 ARS 서비스 제공 추진('18.6월 발표)
⑤ 중학생 체크카드 및 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18.6월 발표)

향후 추진계획

□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각종 **소비자권리 신설**, **사후구제 강화** 등을 담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기반 확충**

□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소비자 친화적 **영업환경** 및 **감독·규제**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추진('18.11월~)

* 예)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

4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 금융편익 제고

1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금융권 경쟁촉진

과제개요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 혜택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

그간의 성과

□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3)

○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사전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보험) 특화보험사 활성화, 소액단기보험회사 도입
(금투)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자문·일임업 등록단위 간소화, 자본금 요건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18.9.20 국회의결)

* (지분보유한도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34%까지 허용(現 은행법 : 4%)
(대주주 거래제한) 신용공여 및 지분증권 취득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민간 전문가 11인)하여 **보험·부동산신탁**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9월)

향후 추진계획

□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 은행업·금융투자업 : '18.4분기, 중소금융 : '19.1분기

□ 금융혁신을 촉진할 **신규참가자**에 대한 **인가절차** 착수

* 인터넷전문은행 : 신규인가 추진방향 발표(금년말)
특화보험사 :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추진('18.10월~)
부동산신탁업 : 신규인가 추진방향 발표 및 인가절차 진행('18.10월~)

2 핀테크 등 금융혁신 활성화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의 파괴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핀테크 활성화**를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

그간의 성과

□ 핀테크산업 지원체계 구축,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18.3월)하여 추진중

□ 新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지속 추진

○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에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 허용('18.9.14, 9건 지정)

○ **(위탁테스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 위탁을 통해 테스트 실시**(6건 완료, 3건 진행중) → **지속 확대**

○ **(비조치의견서)** 테스트를 제약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테스트 전용 비조치의견서"** 신청 중점 관리

향후 추진계획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부여, 지정대리인 지정, 규제신속확인제도 등을 법제화하여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

□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비용 지원,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핀테크 확산** 추진

* 핀테크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핀테크 지원 예산, 정부안 80억원) 편성

3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과제개요

□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인프라**를 **종합적 개선**

그간의 성과

□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8.31)

* ①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②가명정보 이용·제공범위 규정, ③국가지정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허용, ④정보 이용의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등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등*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

* (3.19)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 (5.10)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 (7.18)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주요 추진전략	세부 내용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신용정보회사·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 허용 • 긍정적 공공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데이터 산업 육성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경쟁 촉진
정보보호 내실화	•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향후 추진계획

□ 상기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공통 과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Ⅲ.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목 차

1. 新DTI·DSR 등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37

2.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분양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 37

3.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지수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 ····· 37

4.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 37

5.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 대출은 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38

6.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 담보권 실행,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38

7.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 및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확대 등 우려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38

8.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39

9.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39

10. 대부업 연체채권의 상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39

1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0

12.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율 추가 인하, 최우선변제권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유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41

13.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일몰예정이므로 일몰 연장에 관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42

14. 서민 · 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 43

15.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 43

16.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43

17.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것 ····· 43

18.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하여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4

19.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법 일원화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환경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44

20.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에 기초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45

21.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5

22.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46

23.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시 자금조달계획 및 기관간 권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47

24.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 ····· 47

25.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것 ····· 47

2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48

27.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 48

28.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감독·제재 완화를 타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 49

29. 케이뱅크 인가과정 관련,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것 ····· 50

30.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50

31.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51

32.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51

3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법령 적용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52

3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53

35.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3

36.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은행거래처 기반의 기업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54

37.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대상 벤처창업 성공 시 지분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54

38.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선위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55

39. 증선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간담회 기록, 조치대상 기관의 위원 접촉 금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56

40.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회의의 안건 내용, 발언, 표결 결과, 개회·산회 시간 등을 상세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 56

41.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내 법률·행정전문가를 포함한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것 ····· 57

42.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57

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 ····· 57

44.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8

45.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 58

46. 감사 보조조직의 인사나 예산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9

47.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범죄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9

48. 경제개혁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건의 관련, 특정 단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 60

49.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60

50.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61

51.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61

52.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 61

53.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운용배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2

54.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62

5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63

56.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기업들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 ····· 63

57. 예탁결제원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4

58.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 ····· 65

59.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 및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이들 제도의 연착륙 방안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66

60.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혜성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것 ····· 66

61.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67

62.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67

6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것 ····· 68

64.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68

65.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69

66.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69

67.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70

68.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의 인가 요건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71

69.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1

70. 초대형 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72

71.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72

72.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 ·· 73

73.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73

74.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 관련,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 74

75.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관련, 유동성 및 거래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것 ····· 74

76.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75

77.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할 것 ····· 76

78.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 76

79.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7

80.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SRI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 78

81.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78

82.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79

83. 삼성 차명계좌 관련,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0

84. FIU가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등 차명계좌에 대한 조치 방안 ····· 80

85.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 80

86.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81

87. 공영홈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유사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고할 것 ····· 81

88. 금융기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1

89.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2

90.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3

91.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3

92.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84

93.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 ···· 84

94.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 85

95.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85

96.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 86

97.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7

98.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7

99.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88

100.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가상통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90

101.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90

102.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확인서류 제출 없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91

103.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 이자수익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91

104.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91

105.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장기적 계획 하에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 92

106.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 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92

107.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분야 관련 전시 계획 중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92

108.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93

109.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 93

110.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94

111.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94

112.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94

113.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것 ····· 95

114.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 ····· 95

115.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 96

116.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96

117.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97

118.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하여 점검할 것 ····· 9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新DTI·DSR 등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新DTI, DSR 도입시,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 강구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17.11월) * 청년층·신혼부부 장래소득 인정한도 상향,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의 일시적 2주담대 차주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 등
2.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분양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8.2대책 이전의 규정 적용** (감독규정 부칙 3조)
3.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지수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음
4.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처리결과>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마련·발표('18.1.30) □ 이학영 의원실 주최 「금융그룹감독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후원('18.6.26)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공개('18.6.28) □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발의('18.6.2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
5.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대출은 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신정원, 대부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대부업대출 정보**가 **DSR 산정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6.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 담보권 실행,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연체발생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최대 1년) **유예**하는 제도 도입('18.2월)
7.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 및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확대 등 우려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8.1.11일 부처 합동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① 불법사금융 확대 방지를 위하여 '18.2월~4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 강화** 등 추진 ② '18년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7조원 공급** 등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③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복지지원 연계**(복지부 협업)를 통해 자금애로 경감
8.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17.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점검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 적정성에 대해 **상시 점검 중**으로, **아직까지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17.11월~'18.2월간 점검업체는 10개사 ○ 위법·부당 사례 발생여부 지속 **모니터링**
9.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도중 * '18년 하반기 완료예정 □ 대출기간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 안내를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내용을 금융교육시 적극 반영
10. 대부업 연체채권의 상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채권매각** 및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소멸시효 연장시 연장 필요성 검토 등 준수사항 명확화*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 ('18.4월 시행) □ 각 금융업권별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기준 제정 완료(업권별 협회 규정) * 은행('18.1월), 여전('18.2월), 보험·저축은행('18.3월), 상호금융('18.4월) □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전한 **채권 매매, 소멸시효 연장** 업무 **관련 기준 수립 의무 부여** 추진 (연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캠코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08년)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관련 가능 인력을 감축 ○ 다만, 채권추심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도 불법·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캠코가 직접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17년 제도개선 사항** ❶ 추심직원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불법·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CA사 선정 시 "추심직원의 정규직화" 여부 확인 ('17.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❷ 2년내 감독기관 제재 2회시 계약해지 ·3년간 입찰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 ('17.1) ❸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표준 안내문 마련 · 배부('17.3) ❹ 위탁 CA사 대상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채무고객 인권존중 교육 실시 요청('17.11,13)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심위탁 기준보완 필요성 및 적정 위탁규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12.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율 추가 인하, 최우선변제권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유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7년중 집주인 동의 면제('17.6월), 보험료 인하('17.3월) 등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 건수가 증가함 * 연도별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건수 ('15) 14,156 → ('16) 15,705 ('17) 17,978 □ '17년부터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여 전세금보장보험의 손해율 등을 보아가며, 보험료 추가 인하 방안을 지속 고민·검토 * 연도별 합산손해율 추이(단위 : %) ('15) 56.4 → ('16) 45.0 → ('17) 128.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아울러,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등 임차인의 전세금 걱정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홍보 강화 등 지속 노력 * '18년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연간 1백만원 한도) < 지역별 최우선변제권(임대차보호법) > 지역 / 적용대상 / 최우선변제권 서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3.4천만원 과밀억제권역 / 8천만원 이하 / 2.7천만원 광역시 /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기타 / 5천만원 이하 / 1.7천만원
13.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일몰예정이므로 일몰 연장에 관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등록세 면제 일몰 관련하여 소관 부처(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中** □ '18년부터 등록면허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록면허세 부담이 약 50%까지 감소, '18.1월) **<향후 추진계획>** □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20년 이후에도 **등록면허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4.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재원마련, 사업의 지속성, 기존 복지·금융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추진할 사항
15.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을 거쳐 채무자의 소득수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9년 중)
16.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현 황>** □ 현재 중도금대출은 지역에 따라 **40~60%까지 가능** **<향후 추진계획>** □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도금대출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 한다는 점에서 중도금대출이 필요 없음
17.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원칙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은 특정 업종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진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 (시장경쟁의 영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또한 은행 등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서민 금융 이용시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측면 □ 다만 캐피탈사들도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을 통해 조달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 필요시 관련 규제 합리화 조치를 추진하겠음
18.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하여 금리 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 실시 중(금감원) □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등 추진
19.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법 일원화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환경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 **유암코**(UAMCO)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추가로 부여('15.12월)하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유도하였고, ○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17.12월)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18.7월 母펀드 출자계약, 子펀드 운용사 선정을 거쳐 '18년 內 투자 개시 예정 ○ 기업과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정보 공유**를 위해 **'기업구조혁신센터'**도 구축('18.4월)·운영함 * 캠코 지역본부 內 27개 오프라인 지원센터 신설 및 온라인 정보플랫폼 구축 **<향후 추진계획>** □ 기촉법과 도산법의 **일원화**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 ○ **법원·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
20.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에 기초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진행중 *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도입,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등
21.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조선업 및 해운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선박금융 취급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 ○ 신조 지원 프로그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시중은행의 선박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 해수부·기재부 등과 마련한「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월)」등에 따라 지원방안 지속 추진 예정
22.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산은·수은·무보)이 참여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운영중('16.5월~) ○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한 수주건에 한정하여 국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중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 운영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3.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시 자금조달계획 및 기관간 권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월) **<향후 추진계획>**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 취지대로 해운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 지속
24.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 **변화된 대내외 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수립* 및 시행 *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 수립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연초에 최대한 빠르게 수립·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25.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 잘 대처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서울·부산의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내실화 과제를 차질없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추진하며 글로벌 금융변화에 대처해 나가겠음 * 서울 :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 지속 개선 및 핀테크 산업 집중육성 부산 : 해양·선박산업을 활용하여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발전전략 수립
2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지원을 위하여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자를 공모로 선정하고('17.9월), **'18.9월부터 석사과정 운영중** **<향후 추진계획>** □ **풍부한 퇴직자산, 발달된 ICT**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SWOT 분석 및 추진과제 포함 ○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차질 없는 운영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 추진
27.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성장사다리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18.4월) ○ 창투사 등이 운용하고 있는 하위펀드의 일부 계약서에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 투자원금에 대한 연복리 8% 상환청구권 등 ○ 동 조항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벤처투자의 성공·실패 과정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 □ 이와 관련, 현재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TF를 구성·운영('18.4월)하여, 보다 공정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해설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 ⇒ 동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해설서를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에도 활용토록 할 계획
28.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감독·제재 완화를 타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검사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검사 실시 * 신설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부문검사 실시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증자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9. 케이뱅크 인가과정 관련,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과정 전반을 점검·논의('17.8월 ~ '17.12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8.5.2일)
30.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집행시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음 *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산은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 ○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지원금액한도를 상향조정** 하였음 * 2조원중 95.2%를 핵심분야에 공급 ** 시설자금 300억 → 1,000억, 운영자금 100억 → 300억 □ 한편, '17년 추경(800억원)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산은에 추경자금이 배정됨에 따라 산은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
31.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토록 지도('17.2월~) **<향후 추진계획>**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P2P대출 관련 법 제·개정안 발의(5건) : ①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②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④대부업법 개정안('18.2월 박광온의원), ⑤자본시장법 개정안('18.8월 박선숙의원)
32.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P2P대출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18.3.2) ○ 부동산PF 사업정보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8.2.2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향후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차입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P2P대출 관련 법 제·개정안 발의(5건) : ①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②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④대부업법 개정안('18.2월 박광온의원), ⑤자본시장법 개정안('18.8월 박선숙의원)
3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법령 적용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발표함* *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18.1.25)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18.6.5) -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관련의무,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규제 면제 등 ○ 동 규제 완화 사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현재 법제처 심사 중) **<향후 추진계획>** □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하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처리결과>** □ '18.3.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비식별조치의 법적근거 및 절차 마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등 □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해서도 보안대책 수립 등 관리·감독 실시 * [신정원] IT 현황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IT 보안관제(매일), IT 취약점 점검(매월) 등 실시 * [금보원] 중요단말기 지정 및 관리 등 보안대책 적용 **<향후 추진계획>** □ '18.하반기 중 「신용정보법」 입법 추진
35.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자산, 업력, 자본금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창업생태계 자금배분 분석 결과, 벤처·중소기업 창업초기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반면, 성장단계에는 자금공백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혁신기업의 성장·회수를 집중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결정(3년간 8조원) □ 앞으로 중소기업의 업력,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
36.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은행 거래처 기반의 기업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 담보나 보증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설비, 지재권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금융을 통한 신용중심 대출관행도 지속 확산 추진 *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18.5.23) □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폐지(4.2일)
37.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대상 벤처창업 성공 시 지분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산건전성 분류, 신용평가 체계 등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변경에는 신중검토 필요 ○ 다만, 은행 등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금융위 차원의 재기·재창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신복위를 통해 성실실패자 선별절차를 신속화, 투명화하고 채무감면과 재기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17.9월) □ 국내 벤처투자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도입 예정인 혁신모험펀드 운영과정에서 초과수익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예정
38.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선위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선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 증선위 재심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재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참고로 증선위는 효성 조치와 관련하여 검찰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효성 관련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찰 정보사항으로 제공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금융위는 의견 진술기회 확대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18.2.1)
39. 증선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간담회 기록, 조치대상 기관의 위원 접촉 금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증선위 사전간담회 기록을 위해 **일지를 작성·관리**(기 조치) □ 제재대상자가 증선위 **심의 前 소명**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토록 함 ○ 위원과 제재당사자의 **비공식적 만남, 개별접촉**은 금지 (『금융위 · 증선위 운영 규칙』 기 조치)
40.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회의의 안건 내용, 발언, 표결 결과, 개회·산회 시간 등을 상세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에 맞춰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 개정, 상세 의사록을 작성·공개 중 ○ **작성·공개 중인 의사록**의 내용은 - ①개화·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41.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내 법률·행정전문가를 포함한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것	< 처리결과 > □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권고안을 마련·발표**('17.12.20일) ○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 지원을 위해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금융행정혁신위 활동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 중**
42.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8.5.2일)
4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 관련 연구용역 수행,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44.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성격에 따라 패스트트랙(수사기관 즉시 이첩),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조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 □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권한에 차이*가 있으며, 초기 사건분류 후 개별 사건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업무중복이 발생하지는 않음 * 금융위는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강제조사 가능(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 <향후 추진계획>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계획
45.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8.3.15) 및 국무회의 통과(9.11일) 및 국회제출(9.14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6. 감사 보조조직의 인사나 예산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감사위원회 의결)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1일) 및 국회제출(9.14일) □ 감사 보조조직에 대한 감사위원의 관할권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회사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3.15)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18.下) 추진
47.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범죄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주체인 기업과 감독당국이 임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현행「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법무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이력 조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공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
48. 경제개혁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건의 관련, 특정 단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기존에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T/F*에서 시민단체건의 사항 중 기업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 공정거래 질서 확립 T/F : 기업공시, 회계, 불공정거래, 스튜어드십코드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 향후 더욱 균형감을 갖추고 정책 건의 수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
49.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금감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18.4.17.시행), 공무원행동강령 개정('18.4.17.시행) 등으로 일정 유형의 외부인 접촉시 신고,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사적접촉시 신고 등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0.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총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금융권 고액연봉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1일) 및 국회제출(9.14일)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51.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주요 지표에 대한 과락제, 감점제를 도입하고 건전성 관리 기준을 상향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엄격하게 변경('17.4월) * 연구용역은 지표변경과정에서 세부지표의 통계적 효과 등을 사전적 점검하기 위한 것임 ○ 금융위는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52.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신보·기보의 가압류 신청시 법원이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와 협의* 진행 * 담당자 협의 및 협조공문 발송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그러나, 법원은 국가 이외에는 예외없이 현금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를 신설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 ○ 법원에 대해 보증보험 방식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는 등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53.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운용배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8년 하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적정 보증배수 산출 방식을 개선 예정(입찰 절차 진행 중)
54.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계획을 사전보고하고 검사결과를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승인한 업무계획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 금감원은 사전보고한 계획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산은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회사 감독·관리를 위해 설치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 ('16.2월)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경영 방지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은, 기은은 영업점에 구속성 행위의 엄격한 금지 등 퇴직연금업무 수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조치 ('17.11월) □ 산은, 기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꺽기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은 철저히 근절하고, ○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에 맞게 시장 마찰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음
56.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기업들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신입사원 채용*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한 채용절차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17.11월), 회사는 관련 기준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18.4월) * '15년 이후 신입 대졸채용 全無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채용비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자 징계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18.3월) * (기간) '17.10.23～12.20 (대상) 예보, 산은 등 12개 금융 공공기관 (결과) 제도개선 32건, 채용불공정 8건, 규정위반 5건 □ 향후에도 산은 출자회사 및 금융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음
57. 예탁결제원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74년 증권거래소(現한국거래소)가 100% 출자하여 (주)한국대체결제(現예탁결제원) 설립된 후, ○ '94년 증권예탁원으로 전환하며 주주 다원화 등을 위해 거래소 지분율을 75% 수준으로 축소 □ 그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율 축소를 위해 양사가 지속 노력해왔으나, ○ 저조한 배당률, 낮은 환금성(비상장주식) 등에 따른 투자매력도 저하로 매수자 확보 곤란 등 추진에 한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예탁결제원은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지분 소유구조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거래소의 구체적인 지분처리 방법, 시기 등은 시장 상황의 고려 및 주요 주주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
58.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검토 결과, 舊 재정경제부 유권해석*('05.8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등 업무에 한정하여 인가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신탁표시를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業으로 영위하지 않는 한 신탁업 인가 불필요 ** 상법시행령 제22조제3항 · 제23조제3항 □ 신탁방식 업무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토록 지속 규율 * 신탁표시 행위에 대한 별도 수수료 부과 불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9.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 및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이들 제도의 연착륙 방안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 중임 ○ 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TF 구성**하는 등 지속 지원 중 * 신종자본증권 발행요건을 완화('17.8월) * 보험부채 증가에 미리 대비토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17.12월) ** IFRS17 시스템개발 지원('18.4월 이후)
60.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혜성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므로 시장충격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논의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증시여파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 ○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시된 대안(유예기간 7년부여, 자사주 매입방식 완화) 등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바, 국회 논의가 필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1.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 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7) ○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심평원 등과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권한은 보험업법에 마련되어 있으며(§162),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엄중 조치할 계획(§209)
62.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 가능(§5, §15) ○ 향후,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연·거절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 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사가 실손 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 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연구용역 결과('18.9월 완료)를 통한 보험료 인하방안을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논의 ('18.9.21일) ○ 앞으로도 공보험 체계 개편에 상응하도록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음
64.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보험소비자, 보험전문가, 법률전문가 외에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내 불완전판매 방지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이 참여하고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보험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판매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 * 보험업법규(시행령 제29조의2 등)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교육내용에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65.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반려동물 식별, 의료비 통제장치 등 반려동물보험 출시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험사·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임 □ '18.7월 반려동물의 치료비, 사망 위로금, 배상책임 보험 관련 참조 요율을 개발완료하였음 □ '18.9월 지정대리인 지정을 통해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고령견(만 7세~10세)에 특화된 신규 반려 동물보험의 출시를 지원
66.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등 공매도 투자자 피해 보완책을 추진해왔음('17.3월 시행, '17.9월 지정기준 강화) *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익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 제도 도입이후 '18.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약 550건 지정 ○ 특히, 지정기준 강화 이후 월 평균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 * (강화 전)3.2건/월 → (강화 후)45.8건/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공매도 관련 규제와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어 있으며 * ①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②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제한 ○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 ①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부과 근거마련 ②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마련 □ 현재 구축중인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매도 위반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해 나갈 예정
67.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상장사,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18.1.31일)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주요내용) 주총분산유도 및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등 주총참여 환경 개선, 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및 대국민 홍보 등 **<향후 추진계획>**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음
68.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 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의 인가 요건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8.5.2일)
69.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18.9.19, 정태옥의원) **<향후 추진계획>** □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70. 초대형 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처리결과>** □ 단기금융업 인가와 초대형투자은행 지정을 받은 회사와의 형평성 등 감안할 때 자기자본 기준 등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측면 **<향후 추진계획>** □ 초대형 IB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건전성 규제 강화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71.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진행 중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안)이 '18.3월 정무위에 상정되었음 ○ 손해배상 시효를 대폭 확대*하고 ('18.2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유사제도 도입경과 등을 참조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 → 각각 2년, 5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72.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	<처리결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마련*(1.11.) * (주요내용) 코스닥 자율성·독립성 제고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및 혁신적 플레이어 양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으로 **기관·외국인**의 코스닥 참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기관·외국인 매매비중(%) : (07)7.1, (10)6.6, (13)10.1, (16)9.4, ('18.7.)17.4 <향후 추진계획>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73.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상장절차 간소화, 신상품 상장, 기본예탁금 인하, 헤지전용계좌 도입, 교육제도 정비 등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그간의 제도개선 관련 효과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검토중
74.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 관련,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코스콤 전산설비의 안전성과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보수 중 * 항온·항습 설비 및 배관 누수부분 보수·교체 등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데이터센터 및 전산설비 이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 ○ 데이터센터는 한국거래소 신관(여의도) 지상5층으로 이전·구축('19.3분기) 이후 전산장비 이전('20.4분기) 추진
75.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관련, 유동성 및 거래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KSM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및 스타트업 투자정보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중 ○ KSM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적용 배제* 등 유동성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17년 KSM거래건수 큰 폭 확대(3건→134건) ○ KSM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등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추진 * 나이스평가정보(주)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KSM등록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스타트업기업의 상장전 주식거래 기능 강화 및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
76.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 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장외주식 거래를 제도권 시장인 K-OTC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 K-OTC 관련 세제를 코스닥 등 장내수준으로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거래세율 : 0.5% → 0.3% ('17.4.) 양도차익세율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면제('18.1.) **<향후 추진계획>** □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등 장외거래가 K-OTC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77.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을 현행 50%에서 25%로 강화*하고, 상시 규제로 전환('18.6.29, 금투업규정 개정) *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연 5%씩 단계적 축소
78.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 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그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펀드로 설정·설립하거나 자산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투자(seeding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산 운용사의 운용 책임성을 강화해왔음 □ PEF 등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 개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 운용사 등의 보수체계가 상당 부분 성과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성과에 연계하여 설정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사모펀드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필요시 성과 위주의 보수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79.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고 증권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 증시 거래시간 연장 2년째인 금년('17.8~'18.7)에 거래량(+19.4%)과 거래금액(+50.1%)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중국시장과 매매거래 중첩시간이 확대되며 중국물 ETF의 가격괴리도 개선* 등 시장간 연계도 높아짐 * 국내상장 중국물 ETF 괴리율(%) : ('14.8~'16.7)1.4 → ('16.8~'18.7)0.7 <향후 추진계획> □ 증권업계도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 시가단일가매매시간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0.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SRI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산운용사와 ESG 관련 리서치 기관 간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 사례는 양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 영역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적 계약에서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적계약의 영역까지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사적계약 영역의 문제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리·감독토록 하겠음
81.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한국증권금융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18.9.19, 정태옥의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82.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증권금융 별도예치분에 대해서는 예보료율을 30% 할인하고 있음 ○ 또한, 금투업권은 최근 수년간 기금 목표규모 상·하한 초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면제·감액받고 있음 □ 특정업권의 예보료율 또는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경우, 타업권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11년 이래 업권간 합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소요된 비용을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의 일부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추진계획> □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및 예탁금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3. 삼성 차명계좌 관련,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이 이자 및 배당소득 차등과세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중
84. FIU가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등 차명계좌에 대한 조치 방안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FIU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다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85.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이 한국GM 협조하에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17.11~'18.4) 하였으나 구체적인 회계분식 혐의는 발견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6.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처리결과> □ 산업은행이 소수주주(17%)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온 것으로 파악 중 □ 산은-GM간 한국GM 정상화방안 협의시('18.5월), 산은은 경영자료 제공*, 주주감사권 강화** 등 확보 *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을 정기 보고하고 경영회생 계획 이행을 점검 **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
87. 공영홈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유사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고할 것	<처리결과> □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음
88. 금융기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지원 강화**, 회신 지연시 **사전통보제도 도입** 등 법령해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동 내용을 반영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완료** ('18.7.1일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89.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하위법령에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08.9.1.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15.12.31. 총리령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되면서 규제 심사 절차가 더욱 강화 * 규제의 원칙, 의견청취, 사전보고, 등록·공개 등 규제 신설·강화시에 더욱 엄격한 준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특히 감독규정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행정지도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 관리 체계화 방안을 마련 중** ○ 금감원과 협의하여 **행정지도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보고절차 강화**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 행정지도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추진 예정('18.12월말까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0.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와 공제기관 감독 소관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제업 발전 유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5.22.)하였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임 * 금융위의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한 재무 건전성 협의 요구 및 소관 부처의 금융위에 공동검사 요구
91.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당초 금융규제개선을 주목적으로 했던 옴부즈만을 소비자 중심 금융 혁신을 추진하는 자문기구로 개편 ('18.3월) ○ '18.3월 2기 옴부즈만 위촉 후 현장 건의과제 및 금융협회별 건의과제 중 소비자중심 건의과제 23건을 심의하여 이중 2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 보호정책 과제 발굴에 중점 *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권 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5인의 민간전문가 위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2.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반환기능 효율화를 추진 중 (금융감독원 주관) ◦ 전자금융 및 ATM 이용시 착오송금을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이용환경 개선 ◦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반환동의가 가능토록 서비스 개선 ('18년 중) □ 참고로,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旣발표(예금보험공사 주관)
93.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 ○ 다만, 이미 국내에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신협, 농·수·산림조합)이 각 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신용평가 시스템, 적정자본 및 전문 인력 확보,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신협중앙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18년 下)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 재정립 및 상호금융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
94.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 금융공공기관들의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 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
95.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미국, EU, 호주 등의 해외 입법례 조사, 관련 판례 분석 등 실시('18.6월)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6.11월)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무권한거래 개념을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 ○ 관련 법률의 국회 논의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96.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맞춤형 금융교육 추진을 통해 청년층·노년층 금융교육을 확대함 ○ (청년층) 대학 실용금융 강좌, 대학생 금융특강, 사회복무요원, 신입사원 등 * ('17년 ~ '18.6월말)금감원(165,000여명), 서민금융진흥원(16,000여명), 투자자교육협의회(7,000여명) 등 ○ (노년층)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금융교육 실시 * ('17년 ~ 18.6월말) 금감원(16,500여명), 예금보험공사(17,500여명), 서민금융진흥원(6,000여명) 등 □ 금융교육기관들의 청년·노년층 금융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7.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데이터센터의 주요 소비자인 금융투자회사들이 서울(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 부산이전은 이전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 **<향후 추진계획>** □ 코스콤 부산센터가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핀테크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15년 ~ 현재) ○ 또한 정부과제 컨소시엄(부산 남구, 부경대 등)을 통해 부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98.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18.3월 **행정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였으며, ○ '19년도에 **행정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행정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99.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①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관련** **<처리결과>** □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부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재 발굴·채용 노력을 적극 추진 <신입사원 채용 및 부산지역인재 비율>

구분	한국거래소		
	총 신입사원	부산경남 지역인재	비율
16년도	25	1	4.0%
17년도	35	1	2.9%
18년도*	38	3	7.9%

구분	예탁결제원		
	총 신입사원	부산경남 지역인재	비율
16년도	14	0	0.0%
17년도	29	6	20.7%
18년도*	59	14명	23.7%

* 지원자의 고향, 학력 등을 알지 못하는 완전 블라인드 채용 실시

<향후 추진계획>

□ '19년 신입사원 채용시 블라인드 방식을 지속하고,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등을 도입할 예정

* 총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적에 관계없이 특정 목표 인원으로 선발하는 제도(균형인사지침, 행안부예규 제5호)

○ 한편, 부산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리크루팅 활동 강화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② 핵심부서 서울사옥 집중 관련 <처리결과> □ 한국거래소는 5개 사업본부 중 2개 본부(경영지원본부 및 파생상품시장본부)를 부산(임직원 230여명)에 두고, ○ 예탁결제원은 부서별 인원을 서울(364명)과 부산(335명)으로 양분하여 구성 <향후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사업을 영위하도록 노력 ③ 주요행사 서울사옥 집중 관련 <처리결과> □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재원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시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향후 추진계획> □ 한국거래소의 폐장식, 예탁결제원 기념행사 등을 부산에서 개최하고 ○ 부산지역 주요행사에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0.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가상통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1.30일) ○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가이드라인에 의심거래 참고유형 제시 ○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18.7.10 시행) * 비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도 금융회사간 공유 등 <향후 추진계획>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의심거래보고의무 포함)
101.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 국제기구의 제재대상자의 목록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旣 사용** 중 □ FIU는 **국내은행 및 해외지점 준법감시인**과 지속적으로 **정보교류** 실시* * 준법감시인 간담회('17.11.24), 미 재무부 발간, 대북 금융제재 안내자료 은행권 배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8.2), 미국 내 금융회사 대상 규제동향 설명회('18.2.13) **<향후 추진계획>** □ 은행권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지속 확대** ○ 필요시 은행권이 매달 개최하는 준법감시인 모임에 감독당국이 수시로 참여
102.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확인서류 제출 없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표자명 옆에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협의('17.11.15일, 금융당국·은행권) □ **금감원**이 **피해방지 촉구** 및 **모범 운영사례 전파**('18.3)
103.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 이자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을 통해 은행의 기타부채 계정 항목의 세부현황 파악 중 ○ 현황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 등을 검토중
104.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18.6월~)이며, 외화환전 업무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105.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장기적 계획 하에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17.3월~12월) * 관광업, 여행업, 전세버스 운영업 등 174개 기업에 대해 331억원 지원 □ 향후 사드배치 보복조치에 따른 피해 확대 등으로 관련 대책 논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
106.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 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을 통해 관련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
107.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분야 관련 전시 계획 중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보 및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계획인 충무계획을 매년 정비하고 있고, 을지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금융권은 EMP 공격 등에 의한 전산센터 마비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 중 * 재해복구센터 구축, 데이터 소산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아울러, '핵 EMP' 등 대규모 공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적 대응준비도 강화 할 계획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충무계획 검증 및 보완 □ 과기정통부 주관 EMP 취약점 분석·평가 시범사업 적극 참여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참여(12월 완료 예정)
108.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해외 부실채권 회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검사매뉴얼에 따라 자산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부실채권 회수를 철저히 점검
109.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 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투자 수익률 및 관련 규제를 지속 점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10.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조사(매월) 등 고용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에 따라 충실히 진행토록 점검 * 산은, 기은, 예탁원,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하고 있으며,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전환방식 등 협의 및 전환 절차 진행중
111.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은행권 사용자대표와 금융노조 간 합의로 금융권사용자협의회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17.10.23)
112.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도청 방어는 「국가기관의 도청 탐자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향후 추진계획> □ 민간 금융권의 경우 해당 소관부처(과기부·국정원)와 협의하여 보안태세 강화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음
113.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통계자료 제출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요구기관(감사원, 국세청 등)에 따라 분류하여, 보완된 통계작성방법을 검토 중 □ 통계 작성 개선 방안을 향후 반영할 계획
114.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의견수렴**('17.9~10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17.12월)을 통해 ○ '18.1월 제공건부터 법집행기관 요구에 따라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 각 **법집행기관의 협조**를 독려하고,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개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15.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 점포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대상 행정지도* 실시('17.7월) * ①대고객 안내 철저, ②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③경영 안정성 관리 강화, ④노동관계법령 준수 철저 ○ 앞으로도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고객 보호 조치를 촉구할 계획 □ 「금융회사 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 신설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 확충 추진
116.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씨티은행의 인력감축은 「은행법」상 인가요건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금감원을 통해 씨티은행 점포 폐쇄기간 중 「은행법」상 경영지도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실시 완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17.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규제의 신설·강화 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는 물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도록 제도화** * 명시적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의 네거티브화, 사후규제화 등 5가지 기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제4조제2항) **<향후 추진계획>** □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대하여 자체 발굴은 물론 국조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와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예정**이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하여 **모든 규제 도입시 네거티브 규제 검토를 강화**하고, "사전 규제완화와 사후 제재강화"를 위해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중
118.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하여 점검할 것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보험회사의 사업소장 등 영업조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사안에 대한 점검 실시 여부 등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

Ⅳ.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18년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8.03.05~'18.03.16)』를 실시하였음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 복합기 임차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향후 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쟁 입찰에 부쳐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주의) ○ 향후 해당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정방법과 실적치 측정방법 간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완료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8년도 9월말 현재기준「한국회계기준원」('17.09.04 ~ 09.08)과 「한국FPSB」('17.11.06~11.14),「금융결제원」('18.02.05~02.13), 「신용회복위원회」('18.05.10~05.18)에 대한 종합감사 등 총 4건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

<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정・현원 관리 개선 필요 (개선요구) ○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수행요건과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소요인력을 파악한 후,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정・현원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	완료
□ 재임용심사제도 운영 개선 필요 (통보) ○ 재임용심사 전결권 상향, 당사자 방어권 보장 및 외부위원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 현행 재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	완료
□ 퇴직공로금 지급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개선요구) ○ 최근 기준원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타 유관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향후 특별공로금 지급제도는 재정절감차원에서 개선할 필요	완료
□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근거 마련 필요 (기관주의) ○ 특별상여금은 반드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주의하고, 향후 성과급지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소액현금 관리절차 개선 필요 (개선요구) ㅇ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현금사용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결산결과와 경리담당자 보유 현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완료
□ 섭외성 경비 집행기준 정비 필요 (통보) ㅇ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원 섭외성 경비 집행기준을 정비할 필요	완료
□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공개범위 개선 필요 (권고) ㅇ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의 관심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서면보고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도 공개할 필요	완료
□ 질의・회신업무 관련 규정 미흡 (권고) ㅇ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비공식 질의 등 단순 질의 등도 포괄하도록 기준원 규정을 정비할 필요	완료
□ 정보통신기기 내용연수 개선 필요 (개선요구) ㅇ 조달청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준원 주요 정보 통신기기 내용연수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완료

< 한국FPSB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자문위원 관련규정 미비 및 운영 부적절 (기관주의) ㅇ 부적정한 자문료 집행에 대하여 주의하고, 향후 근거없는 자문위원 위촉 및 과다 수당지급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	완료
□ 특별공로금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ㅇ 특별공로금(약 8.7억원) 지급은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고, 한국FPSB의 예산규모(연간 50억원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며, 그로인해 법인의 재무상태를 적자에 이르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환수조치 필요	이행 중
□ 상여금 관련 규정 미비 및 운영 부적절 (시정요구) ㅇ 규정보다 과다지급한 성과상여금(총 1억여원)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이행 중
□ 정회원 가입조건 등 총회 운영 개선 필요 (통보) ㅇ 향후 총회가 회원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회 회원 가입조건 등을 개선할 필요	이행 중
□ 정회원 임의가입 및 총회 재적위원 임의산정 (문책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ㅇ 정회원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향후 정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임원 선임방식 개선 필요 (권고)	이행 중
ㅇ 향후 FPSB는 조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 국가자격증 등록기관들의 임원선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임원의 임기횟수나 회장 선출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	
□ 계약 관련 규정 미비 (개선요구)	완료
ㅇ 향후 계약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계약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할 것	
□ 회사차량 운용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완료
ㅇ 회사차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차량관리 기준 마련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철저	
□ 섭외성 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요구)	완료
ㅇ 섭외성경비의 내부통제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 추진비는 환수조치	
□ 계약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권고)	완료
ㅇ 업무특성상 계약, 회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	
□ 회계규정 제정 필요 (권고)	완료
ㅇ 회계처리 및 출납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FPSB의 특성에 맞는 내부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미기재 (권고)	완료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실무지침 등에 따라 재무제표 상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세부항목을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	
□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 부적정 (시정요구)	완료
ㅇ 정관상 승인되지 않은 영리사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	
□ 도서발간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통보)	완료
ㅇ AFPK·CFP 자격증 응시 수요를 신중하게 예측하고 구판도서 및 불용도서 발생에 따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	
□ 부동산 매매거래 투명성 제고 필요 (개선요구)	완료
ㅇ 자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처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등의 거래는 관련 기준 및 내규 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안을 마련	
□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제정 필요 (통보)	완료
ㅇ 법인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인 제반 규정들을 조속히 제정 및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	

<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직위, 직급, 직책 혼재 등 인사관리제도 정비 필요 (통보) ㅇ 직위·직급·직책·승진·승격·승급 등 혼재된 용어 및 직위별 대응직급과 직책 등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유사직위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	완료
□ 직원 공개채용전형 외부위원 참여 미흡 (통보) ㅇ 채용전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완료
□ 임직원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필요 (통보) ㅇ 조직내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급률 차등확대,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성과급제도 개선 필요	완료
□ 상임고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 (개선요구) ㅇ 전임 원장이 퇴직 후 3년간이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해 과도한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	완료
□ 정·현원 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ㅇ 총회에 보고된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을 운용하는 방안 및 정원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상위 직급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개선요구) ㅇ 부서장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	완료
□ 국외여비(숙박비) 지급제도 개선 필요 (개선요구) ㅇ 숙박비가 실제 숙박한 일수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완료
□ 지방 사무소 운영 부적정 (개선요구) ㅇ 현재 지방사무소가 수행하는 부도신고 취소 등 단순업무의 개선과 예선절감차원에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지방사무소를 축소	완료
□ 해외체험연수 운영 부적정 (개선요구) ㅇ 해외연수과정이 단순 체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완료
□ 일부 재무제표 항목의 계정 분류 오류 (시정요구) ㅇ 관련규정에 따라 예수금 중 신용카드사용액, 리스미지급금 및 리스료 지급 등 일부 계정분류 오류를 시정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개선요구) ○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퇴직급여충당금의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완료
□ 회계처리 원칙 정비 필요 (권고) ○ 재무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에서 마련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원칙을 정비할 필요	완료
□ 상품권 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 규정상 근거없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완료
□ 자가운전보조비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 향후 자가운전보조비가 부당하게 지급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완료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현실화 필요 (통보) ○ 대부분 금융권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을 참고하여 1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모바일전자지갑(뱅크월렛)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절차 미흡 (개선요구) ○ 잔존하는 USIM형 전자지갑 사용자 요청시 뱅크월렛 서비스를 해지·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USIM에 저장된 잔액을 처리(환급 등)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것	완료
□ 공동규약 체결시 신용정보처리 관련 교육 의무화 (개선요구) ○ 공동규약 제·개정시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교육 의무 조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	완료
□ 수수료 수익발생 공동사업 관련 회비분담기준 개선 필요 (권고) ○ 금융결제원이 중개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상기 2개 공동사업의 회비분담시 회원사의 수수료 수익금액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회비분담금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참가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련·시행할 필요	완료
□ 서버보안관리 미흡 (개선요구) ○ 향후 모든 서버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안패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내부규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단말기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소홀** (개선요구) ㅇ 향후 단말기 및 네트워크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운용하여 관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완료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채용방식 다양화 및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필요** (통보) ㅇ 향후 경력직 채용 등 채용방식 다양화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등 공개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완료
□ **신복위 사무국장 및 본부장 보수결정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 (통보) ㅇ 향후 보수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보수는 이사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	완료
□ **신용상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조직 보강 등 조치 필요** (통보) ㅇ 체계적인 상담 품질개선·기능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조직 및 규정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할 필요	완료
□ **예산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기관주의) ㅇ 당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이행 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 해외연수제도 개선 필요 (개선요구) ○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출장여비 지침, 철저한 사전 해외연수계획 수립, 불필요한 출장일정 제거 및 통역비 지급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완료
□ 업무용 차량 및 운전대행서비스 운용관련 개선 필요 (개선요구) ○ 업무용 차량 운행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운전대행서비스 이용관련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완료
□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 대외적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물품구입의 경우 구체적인 구입품목 및 대상 등을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완료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인원 정확성 개선 필요 (시정요구) ○ 해당 연도의 입사자, 퇴사자, 급여지급 대상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의 인원 현황과 비교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인원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	이행 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 회계규정 정비 필요 (권고) ○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상황에 맞는 내부 회계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	완료
□ 변제금 선납 및 중도완제자에 대한 불합리한 소액금융 대출금리제도 개선 필요 (통보) ○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동 기간 중에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선납하거나 중도완제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완료
□ 주민등록번호 처리관련 업무 개선 필요 (개선요구) ○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 관련 업무 취급 시 가족 또는 동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서류 징구, 관련 지침 마련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	완료
□ 정보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시행 필요 (개선요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여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	이행 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신용상담사 시험응시료 관련 전산개발 미활용 (기관주의) ○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진행시 그 필요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이행 중
□ 사업부서 자체계약 부적정 (통보)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사업부서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	완료

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2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8개

가.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1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경제적 회생 지원

나.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1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2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4개

○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용,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모기지, 전세대출보증,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지원

○ (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 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3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4개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및 재기·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총괄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4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산하공공기관		-	2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Ⅵ. 기타 사항

Ⅰ. 일반 현황

1 설립 및 목적

□ ‘08.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업무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

3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금융위원회법 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금융위원회법 제19조)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구성(1관 3국 1단 1대변인 2정책관 23과)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설치(2실 4과)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92명 / 현원 : 287명** (‘18.10.4일 현재)

□ **예산**(‘18년) : 일반회계 **세입 286억원, 세출 2조 4,469억원**

참고 2019년도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7억 5천 1백만원**으로 2018년 예산대비 **101억 6천 6백만원 증가**(35.6%)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18예산(A)	'19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28,585	38,751	10,166	35.6
과 태 료	6,762	8,031	1,269	18.8
과 징 금	21,261	30,443	9,182	43.2
가 산 금	110	60	△50	△45.5
기타경상이전수입	452	217	△235	△52.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0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52억 원 증가**(26.8%)

○ 2019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조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52억 원 증가**(188.9%)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예산은 2조 1천억원**으로 전년과 동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A)	'19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2,446,906	3,102,155	655,249	26.8
□ 금융위원회 운영	346,906	1,002,155	655,249	188.9
○ 인 건 비	23,744	27,226	3,482	14.7
○ 기 본 경 비	6,374	7,501	1,127	17.7
○ 사 업 비	316,788	967,428	650,640	205.4
□ 내부 거래	2,100,000	2,1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00,000	2,100,000	-	-

II.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4)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5)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3)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혁신 관련 (3)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서민금융 관련 (5)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 공포 및 시행일 미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 18년 8월말 현재 공포일자 기준

참고 '18년도 법률 제·개정 실적

법 률 명	분류	공포일자	주 요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18.2.21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타 법률 등에 맞추어 법정 행정형벌의 수준을 조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8.2.21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 광고를 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포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2.2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보험업법	개정	'18.2.21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인회계사법	개정	'18.2.21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8.2.21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	'18.2.21	담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

법 률 명	분류	공포일자	주 요 내 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개정	'18.3.13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3.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한편,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8.3.27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총 신용공여한도 확대
보험업법	개정	'18.4.17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8.4.17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4.17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8.8.14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8.8.14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규정

* 18년 8월말 현재 공포일자 기준